

[일련번호 : 18]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자율방범대 경비 정산 누락 및 집행 부적정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◻◻동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◻◻동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에 따라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·정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회계법」 제5조(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)에 따르면 ‘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고, 이에 따라 모든 회계서류는 입증책임이 있어 구매한 물품에 대한 지급 내역이 명확하여야 한다.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」(시행 2018.12.18. 전부개정 2024.12.19.) 제6조(경비 지원 등) 및 2023~2024년 양천구 「자율방범대 운영계획」에 따라, 17개 동에 구성된 18개 대대자율방범대원에게 복장·장비구입비, 야간 근무활동을 위한 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, 동주민센터는 전월 근무일지와 지출증빙 등 방범대 제출 정산서를 확인·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며, 정산자료를 분기별로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또한 양천구 「자율방법대 운영계획」에 따라 야식비는 매식단가의 1/2 이내에서 자율방법대 실비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간이 영수증 등 신뢰성 없는 증빙서 정산 및 주류·생활용품 등 순찰 및 활동과 무관한 지출을 금지하는 등 회계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적절한 회계집행을 관리하여야 하고, 차량 유지비는 자동차세·보험료·시설 개보수 비용에 한하여 지원하며 차량 소유권이 개인에서 단체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2022~2024년)」 301-06(자율방법대 실비지원)

- 손전등, 모자, 완장, 호루라기, 곤봉, 피복비 등 소모성운용비
- 방법순찰대에 대한 야식비(야식비는 매식단가의 1/2 이내 적용)
- 출동비는 각대별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계상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동은 감사대상 기간 동안 자율방법대 운영비 지출 시 편의점, 마트에서 야식비를 목적으로 간식 등을 구매하면서 총액 영수증만 첨부하고 세부 구매내역서 등을 누락하였음에도 운영비 정산처리하였으며, 실비정산 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후 예산(실비)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2023년 7월 추가운영비 지급 시 영수증 등 지출증빙 없이 순찰일지만으로 일괄지급하거나, 2024년 차량 유지비 사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여부 확인 및 차량 보험료 지출증빙 확인 등의 실비 정산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.

[표] 자율방법대 운영비 부적정 지출 내역 - 세부내역 별도송부

연번	지적사항
1	- 2023~2024년 A구역 자율방법대 야식비 지출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, 마트 등에서 간식을 구입한 경우, 세부 거래내역 (물품 구입내역) 필요하나, 총액 영수증만 첨부
2	- 2023년 7월 구역별 추가 운영비(구역당 100,000원)를 지급하면서, 실비 정산 원칙에 따라 실제 활동일에 지출한 증빙자료(영수증)를 첨부하여 정산 지급하여야 하나, 순찰일지만을 근거로 일괄 지급 (해당 방법대 통장에 교부된 100,000원 사용내역 미확인)
3	- 2024년 차량 유지비(구역당 1,000,000원) 사용 후 정산서, 지출 증빙 누락 B구역 100만 원 미사용 후 전액 반납(2024. 12월) C구역 100만 원(**보험) 지출(2024. 6. 28.) 후 정산 누락 (소유권 이전 확인 서류 및 증빙서류 등 일체 미확인)

#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동은 음식점이 아닌 마트에서 지출하면서 물품구입 내역 없다는 점(\*\*마트, 세븐일레븐에서 구매하면서 상품명 식품으로만 기재)은 자율방법대 실비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졌고 해당 영수증은 마트 및 편의점에서 정식발급한 일반영수증으로 간이영수증 등 기타 신뢰성 없는 증빙서로 보기 어렵고 \*\*마트, 세븐일레븐은 일반마트/편의점으로 판매하고 있는 항목이 한정적인 점과 이에 관한 지출은 야식비(과자, 사탕, 기타 간식류 등) 항목에 해당하므로 야식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.

그러나 마트와 편의점은 과자, 음료, 사탕 외에도 담배, 휴지, 세제, 주류, 양말, 구강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종으로, 업종 특성과 실제 판매 품목을 고려할 때 판매항목이 한정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또한 ◆◆동은 2023년 7월 운영비 지급은 활동기간 23.6.1.~23.6.30.되며 추가 운영비 교부 날짜인 2023.7.3.은 자율방법대의 활동기간과 겹치지 않아 7월 운영비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불가능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,

자치행정과-4000호(2023.6.30.)에서는 3분기 추가 운영비를 교부하면서, 운영비 정산보고서 서식을 첨부하고,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 및 그 결과를 정산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, 2023.7.3. 추가 운영비 예산이 교부되었다고 해서 방법대의 실비 정산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, 투명하고 적절한 회계 관리를 위해 운영비 사용 및 집행 내역에 대한 증빙과 정산 관리는 반드시 수행되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#### 5. 조치할 사항

##### ◆◆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자율방법대 운영비 지원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